

의안번호	제450호
의결 연월일	2009년 12월 일 (제285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09년12월 7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년 12월 7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집중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직급 책정 협의(3급, 한시)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의됨에 따라,
- 현재 균형발전국 T/F로 운영중인 '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'을 독립기구로 설치하고, 관련 사무를 이관 조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局단위 한시기구 설치 ⇨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(안 제5조)
 - 본청기구 : 1실7국1본부 ⇨ 1실7국1단1본부 (+1단)
 - ※ 기한 : 2010.12.31까지 (직제순은 문화관광환경국 다음으로 조정)
- 분장사무 이관 (안 제9조, 안 제13조의2)
 - 균형발전국 →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
 -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,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
 -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
 -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
 - 오송신도시,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(실장·국장·단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)

충청북도(이하“도”라 한다) 본청의 실장·국장·단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실·국·단·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관리실, 행정국, 경제통상국, 균형발전국, 건설방재국, 농정국, 보건복지여성국, 문화관광환경국,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.

제9조 중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)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,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
2.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
3.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
4. 오송 신도시,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)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“균형발전국장”을 “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실장·국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) 충청북도(이하“도”라 한다) 본청의 실장·국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조(실장·국장·단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) 충청북도(이하“도”라 한다) 본청의 실장·국장·단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5조(실·국·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관리실, 행정국, 경제통상국, 균형발전국, 건설방재국, 농정국, 보건복지여성국, 문화관광환경국, 소방분부를 둔다.</p>	<p>제5조(실·국·단·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관리실, 행정국, 경제통상국, 균형발전국, 건설방재국, 농정국, 보건복지여성국, 문화관광환경국,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및 소방분부를 둔다.</p>
<p>제9조(균형발전국)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~ 9. (생략) 10.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,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11.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2.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. 오송 신도시,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4.~16. (생략)</p>	<p>제9조(균형발전국)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~ 9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10.~12.(중전의제14호부터제16호까지와 각각 같음.)</p>
<p><신 설></p>	<p>제13조의2(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)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,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2.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 3.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. 오송 신도시,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</p>

관련법령 발취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③~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9조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[별표 1]

시·도의 실·국·본부 설치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구 분		실·국·본부
서울특별시		14개 이내
광역시	인구 300만 이상 ~ 500만 미만	12개 이내
	인구 200만 이상 ~ 300만 미만	11개 이내
	인구 200만 미만	10개 이내
도	경기도	18개 이내
	인구 300만 이상 ~ 400만 미만	11개 이내
	인구 200만 이상 ~ 300만 미만	10개 이내
	인구 100만 이상 ~ 200만 미만	9개 이내

비고 : 실·국·본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·국·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·국·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.